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93
----------	-------

발의연월일 : 2024. 3. 4.

발 의 자 : 김은희 · 황보승희 · 박덕흠
송석준 · 지성호 · 유경준
김미애 · 조수진 · 이인선
김근태 · 윤영석 · 김예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 또는 전시·상영 등을 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고 있음.

최근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는 성적수치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포된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넓어 피해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중상해와 같은 수준의 고통으로 볼 수 있음. 더구나 촬영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착취물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과 함께 그 피해정도가 가중되고 있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촬영대상

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처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해당 촬영물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촬영물과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해당 촬영물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촬영물과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해당 촬영물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촬영물과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해당 촬영물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촬영물과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해당 촬영물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촬영물과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 ③ (생략) <u><신 설></u>	협박·강요)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해당 촬영물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촬영물과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	---